

# 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  
 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2.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위반일시(렌트카 변경 재부과) : `18.07.10 ~ `18.12.10  
 - 무인감시카메라(통행위반) : `18.12.11 ~ `18.12.31  
 - 주행형, PDA단속(시민신고) : `18.11.08 ~ `18.12.31

나. 통보건수 : **소승훈 등 5,513명**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분	건 수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	적 발 제 외	
		소 계	CCTV (통행위반)	기 동(PDA) (주행형)	시민 신고	서손 건수	제외사유
금회	6,035	5,513	5,356	18	139	522	-연속단속 -면제차량
전회 누계	163,299	134,198	128,361	3,947	1,890	29,101	-진입구간 짧음 -자납
누계	169,334	139,711	133,717	3,965	2,029	29,623	-기타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9.01.08 ~ `19.01.28(20일간)

- 붙임: 1.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. 1부.  
 2. 적발제외 내역 1부. 끝.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9-01-30 19:03:15



# 서울특별시

주무관 **노미선** 전용차로과장팀장 **김숙자** 교통지도과장 01/08  
오종범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463 ( ) 접수 ( )  
우 /  
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부분공개(6)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9-01-30 19:03:15